

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

[] 소방안전관리자 [] 총괄소방안전관리자
[] 소방안전관리보조자 []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

소방안전 관리대상물 (건설현장)	대상물명			등 급	[] 특급 [] 1급 [] 2급 [] 3급	
	소재지 (연락처)			선임범위		
	건축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
소방안전 관리자 (보조자)	성명				생년월일	
	주소				전화번호	
	선임일자				자격등급	
대행업체	업체명				계약기간	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,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,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, 총괄소방안전관리자,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)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※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

소방안전관리자 업무	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
1.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,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.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·운영·교육 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5. 소방훈련 및 교육 6. 화기 취급의 감독 7.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·유지 8.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	1.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.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.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,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.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. 초기대응체계의 구성·운영 및 교육 6. 화기취급의 감독,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.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